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5월 15일

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8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·리장 18명 증원(안 별표)
  - 당초 : 649개 통·리장(통장 473, 리장 176)
  - 변경 : 667개 통·리장(통장 485, 리장 182)
    - 선산 1, 고아 2, 산동 3, 형곡1동 2, 신평2동 1, 비산 3, 진미 3, 양포 3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18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649명에서 667명으로 18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